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아량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62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3월 26일
발 의 자 :송아량 의원(1명)
찬 성 자 :김상훈, 김태호, 김호진, 송도호, 우형찬, 이광호, 이승미, 이은주, 정지권, 정진철, 추승우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는 서울교통공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고의 대상을 의회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이 불분명한 만큼 보고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교통공사가 의회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 그 보고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(안 제5조의2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.구 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”로 한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의회에 대한 보고) ① 공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9. (생 략)	제5조의2(의회에 대한 보고) ① ----------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-----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